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산림보호법」이 개정시행(법률 제11351호, 2012.08.23.)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9에 따라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(안 제1조)

나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4조)
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
-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함.
- 위원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및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련단체 임직원, 성주군 주민으로 구성함.

라.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

마.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(안 제6조)

바.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통보, 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사. 위원회 출석 등 위원의 의무와 의무 위반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및 재위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아.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
자. 심의 안건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
차. 상정안건의 심의의결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카.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2조)

타. 안건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3조～제14조)

파. 간사의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)

하.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 (붙임 1 참조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3. 01.11. ～ 2013. 01.31. 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결과요약서 (붙임 2)

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(붙임 3)

(5)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9에 따라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성주군수는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2.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
4.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산사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산사태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성주군 지역주민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,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9조(회의의 진행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"관계인"이라 한다),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상정안건 심의)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.

1.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"원안 의결"로 한다.
2.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"조건부 의결"로 한다.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.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"심의보류" 로 한다.
4.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"부결"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록 등)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심사사항
3. 회의진행 상황
4. 위원 발언요지
5. 심의결과
6.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현지조사)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서면심의)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, 상정안건의 설명,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6조(위원회의 수당 등)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